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안

의안
번호

1039

발의일시 : 2009. 3.

발의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순철의원과 인

1. 제안이유

최근 정부에서는 타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의무화 할 경우 한강상류 지역은 제외하고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

2. 주요내용

- 가. 한강수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시장·군수가 수질관리상 필요한 경우 오염 총량제를 도입 시행하도록 하는 임의제 오염총량 관리제가 시행중에 있음
- 나. 충주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의 맑은 물 보존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공장의 신규입지 제한, 지역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충주댐 건설 등 수많은 제약과 규제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높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들은 수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한강수계 전역으로 수질오염총량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우리 충주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그간 충주시민의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음
- 라. 따라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은 그동안 국가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한강상류지역을 제외하고, 사전 합의한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3.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4. 붙임 :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따른 건의문

건의문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국정 현안의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한승수 국무총리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지난 세월 우리 충주시는 남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면서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공장의 신규 입지 제한 등 지역개발에 있어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 시민의 정서는 피폐해지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시민에게 수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강수계 상류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 개발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점을 인정하여 4대강 수계법 제정시 한강수계는 시장·군수가 수질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시행할 수 있는 임의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3대강 수계와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는 충북·강원권 자치단체는 배제하고,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들과의 사전 협의만으로 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한강수계 상류 지역 소도시의 지역경제를 고사위기로 내모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과 약속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우리 21만 충주 시민은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과 홍수피해 예방 및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충주댐 건설 등으로 수많은 제약과 안개일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간의 21만 충주시민의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하고, 만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한강 수질보전 방안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 자치단체와 합의한 대로 한강수계 전 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강수계 상류지역인 우리 충주시민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21만 충주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1.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는 그동안 국가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한강상류지역을 제외하고, 사전 합의한 경기도 지역에 대하여만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를 한강수계 전체에 도입 한다면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수질개선과 상·하류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한강수계 상·하류 지역에 동일목표 수질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 도입에 앞서, 그간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와 수도권 홍수피해 예방 및 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충주댐 건설에 따른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보상대책을 사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3일

충청북도 충주시의회의원 일동